

m의 城山洞 自動車 整備團地로 인하여 發生하는 騒音, 분진, 煤煙, 洗車場 水質汚染 등의 環境公害와 사고차량 등의 無秩序한 방치, 견인차량의 高速疾走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生活不便은 물론 交通事故의 危險性마저 높아 住居生活을 하기에는 매우 불안하고 불편한 地域으로 早速한 시일내에 본 整備團地를 都市外角 地域으로 移轉해 줄 것을 促求하는 請願으로 동 지역여건 등을 都市建設委員들이 심사한 바에 의하면 당초 整備團地 조성취지는 도심 곳곳에 산재해 있는 自動車 整備 業所를 도심외각 지역으로 移轉하여 도심권내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도심 기능을 분산하여 도시를 整備하기 위하여 본 整備團地를 조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現在의 周邊與件은 당초 團地 造成 趣旨인 도심 외각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은 없어지고 고층 아파트 단지등 주거 密集地域으로 지역여건이 많이 變化된 만큼 執行機關에서는 첫째, 整備團地內 業體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強化하여 불편 요소들을 除去함으로서 住民生活에 不便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둘째, 해당 關係機關과 조속히 協議하여 本整備團地가 도심 외각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본 請願人들의 要求事項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委員會에서 審査한 의견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城山洞 自動車整備團地 移轉促求 請願에 대한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宗一 朴相洙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들으신 바와 같이 自動車 整備團地 移轉促求에 관한 請願에 대하여 都市建設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내용과 같이 우리구의 회 意見으로 採擇하고자 하는데 여러議員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9일간의 議事日程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회기 기간중 열과 성을 다하여 回附된 案件審査를 위하여 수고하신 同僚議員 여러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11월 25일부터 열릴 예정인 定期會에 대비한 事前準備도 충실히 하셔서 활기찬 論議와 討論 등을 통한 내실있는 定期會가 될 수 있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이것으로써 第41회 서울特別市 麻浦區議會 臨時會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1分 散會)

○出席議員(29人)

李 宗 一	庾 應 鳳	金 星 煥
李 應 洵	李 天 揆	金 順 錦
裴 相 大	金 英 植	金 鍾 烈
沈 載 昶	朴 映 吉	鄭 聖 鈺
洪 性 煥	朴 東 七	俞 南 烈
韓 大 運	鄭 晚 植	朴 相 洙
金 東 暉	蔡 在 善	金 世 昌
金 忠 煥	金 平 田	李 震 杓
庾 東 均	金 裕 顯	尹 明 奎
韓 守 均	權 五 範	

(參照)

서울특별시마포구청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6.11.4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10월 31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6년 10월 31일

다. 상정일자 : 제41회 임시회 2차 위원회('96.11.4)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문 업 승

가. 개정이유

○지방화시대의 행정여건과 특성에 부합하고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치구의 기획·조정등 총괄 조정기구인 국장급(4급) 기획실을 신설하고, 자동차 경정비업소등록에 대비한 자동차등록 기구·기능의 일원화를 위한 전담부서인 자동차정비계의 신설로 지방행정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 개정골자

- 기획·조정 총괄기구인 기획실을 신설 (안 제2조)
- 총무국의 기획예산과를 기획실의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감사실을 감사담당관,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변경하여 조직의 활성화 도모(안 제3조)
- 시민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하고 총무국 소속으로 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 (안 제4조)
- 방치차량관리 및 자동차 검사 등의 업무 신설(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 및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장급인 기획실을 신설하고 그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문화공보담당관을 두어 기획조정, 예산관리, 감사, 문화공보등의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시민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개편하여 총무국 소관으로 하며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동차 경정비업소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교통행정과에 자동차정비계를 신설하려는 내용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보면, 실을 설치하는 일반적인 요건으로는 업무의 성질상 국 또는 과로서는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하고, 담당관은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조사, 분석, 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바와 같이 금번 새로 신설되는 기획실은 명실공히 마포구의 기획, 조정 등의 총괄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김종열 위원) : 조례(안) 제3조 제3항 제3호에 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중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을 환경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 답변요지(문엽승 총무과장) : 공해문제라든가 하는 사항은 환경과 분장사무임

○ 질의요지(정만직 위원) : 행정기구를 확대하는 것 보다는 기구를 축소하여 근무직원이 부족한 부서에 인원을 충원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 답변요지(문엽승 총무과장) : 지방화시대에 발맞춰 행정여건과 지역특성에 걸맞는 자치구의 기획·조정등을 총괄하는 기획실의 신설은 필요함.

○ 질의요지(이인구 위원) : 정화조 업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인원이 부족하여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부족한 부서에 인원을 충원해야 되지 않은가?

○ 답변요지(양석용 총무과장) : 이러한 문제점을 참고, 앞으로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음.

○ 질의요지(정만직 위원) : 국장실을 통합하여 현재 각 국장실에 있는 여직원을 2~3명만 근무토록 하고, 잔여인력은 직원이 부족한 부서에 배치할 용의는 없는가?

○ 답변요지(양석용 총무과장) : 현재 각 국장실을 통합할 경우에는 전화민원접수 등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검토해 보겠음.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사항 : 없음

의안 번호	120
----------	-----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출일자 : 1996.10.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화 시대의 행정여건과 특성에 부합하고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치구의 기획·조정등 총괄 조정기구인 국장급(4급)기획실을 신설하고, 자동차 경정비업소등록에 대비한 자동차등록기구·기능의 일원화를 위한 전담

부서인 자동차정비계의 신설로 지방행정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기획·조정 총괄기구인 기획실을 신설(안 제2조)
- 총무국의 기획예산과를 기획실의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감사실을 감사담당관,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변경하여 조직의 활성화 도모(안 제3조)
- 시민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하고 총무국 소속으로 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안 제4조)
- 방치차량관리 및 자동차 검사 등의 업무 신설(안 제7조)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5.12.29 법률제 5,069호) 제15조, 제10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1995.12.28 대통령령 제14,841호) 제10조

4. 조례안: 별첨

5. 예산초치: 필요

첨부: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문화공보실·감사실·시민봉사실”을 “기획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획실) ①기획실에 기획예산담당관·감사담당관 및 문화공보담당관을 둔다.

②기획예산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구정의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 2.예산의 편성·배정·예산의 교부에 관한 사항
- 3.예산의 투자 심사 및 재정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4.법제심사 및 송무에 관한 사항

5.전산 및 통계에 관한 사항

③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2.감사·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 처리
- 3.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④문화공보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2.공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 3.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 4.관광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

제4조 및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 내지 제11조”를 “제4조 내지 제9조”로 각각 한다.

제4조(중전의 제6조) 제1항중 “기획예산과”를 “민원봉사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민원봉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문서·판인·민원상담 및 민원안내에 관한 사항
- 2.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장표 및 자료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사항
- 3.재증명의 발급·진정의 접수처리·호적에 관한 사항
- 4.구·동 민원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5.병사에 관한 사항

제7조(중전의 제9조) 제5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방치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 7.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7조제3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각각 한다.

②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

으로, “감사실 민원관리계장”을 “민원관리계장”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감사실”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시민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실·국의 설치) 마포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문화공보실·감사실·시민봉사실·총무국·재무국·시민국·도시정비국</u> 및 <u>건설국을 둔다</u>	제2조(실·국의 설치) <u>기획실</u>
제3조(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u>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u> <u>2. 공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u> <u>3.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u> <u>4. 관광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u>	제3조(기획실) ① <u>기획실에 기획예산담당관·감사담당관 및 문화공보담당관을 둔다.</u> ② <u>기획예산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u> <u>1. 구정의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u> <u>2. 예산의 편성·배정·예산의 교부에 관한 사항</u> <u>3. 예산의 투자심사 및 재정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u> <u>4. 법제심사 및 송무에 관한 사항</u> <u>5. 전산 및 통계에 관한 사항</u> ③ <u>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u> <u>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u> <u>2. 감사·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처리</u> <u>3.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u> ④ <u>문화공보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u> <u>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u> <u>2. 공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u> <u>3.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u> <u>4. 관광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u>

(다음 페이지에 계속)

현행	개정안
<p>제4조(감사실) 감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감사·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처리 3.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p><삭 제></p>
<p>제5조(시민봉사실) 시민봉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서·관민·민원상담 및 민원안내에 관한 사항 2.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장표 및 자료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사항 3. 제증명의 발급·진정의 접수처리·호적에 관한 사항 4. 구·동민원 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병사에 관한 사항 	<p><삭 제></p>
<p>제6조(총무국) ①총무국에 총무과·기획예산과·사회진흥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p> <p>② (생략)</p> <p>③기획예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정의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배정·예산의 교부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투자심사 및 재정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법제심사 및 소송에 관한 사항 5. 전산 및 통제에 관한 사항 	<p>제4조(총무국) ①총무국에 총무과·민원봉사과·사회진흥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p> <p>②(현행과 같음)</p> <p>③민원봉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서·관민·민원상담 및 민원안내에 관한 사항 2.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장표 및 자료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사항 3. 제증명의 발급·진정의 접수처리·호적에 관한 사항 4. 구·동 민원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병사에 관한 사항
<p>④~⑤ (생략)</p> <p>제7조(재무국) ①~⑤ (생략)</p> <p>제8조(시민국) ①~⑦ (생략)</p> <p>제9조(도시정비국) ①~④ (생략)</p> <p>⑤교통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5. (생략) <p><신설></p> <p><신설></p> <p>⑥~⑦ (생략)</p> <p>제10조(건설국) ①~⑤ (생략)</p> <p>제11조(계의설치 및 사무분장) ①~② (생략)</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5조(재무국) ①~⑤ (현행과 같음)</p> <p>제6조(시민국) ①~⑦ (현행과 같음)</p> <p>⑤.....</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5. (현행과 같음) 6. 방치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7. 자동차검사에 관한 사항 <p>⑥~⑦ (현행과 같음)</p> <p>제8조(건설국) ①~⑤ (현행과 같음)</p> <p>제9조(계의설치 및 사무분장) ①~② (현행과 같음)</p>